

해외직구로 산 면세품, 되팔면 불법!

해외직구 이야기

2021/07/29 17:56

http://blog.naver.com/k_customs/222449862901



해외직구를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이미 해외직구를 현명하게(?)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.

면세한도 내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합산과세 되지 않게 조심조심~ 또 내 물건이 언제 국내에 도착할까 노심초사 트래킹 번호 조회하고 기다리겠죠.



우여곡절 끝에 내 손에 들어온 물건. 막상 받고 보니 색상이나 사이즈가 생각과 달라서, 수량 입력을 잘못해서 등 여러 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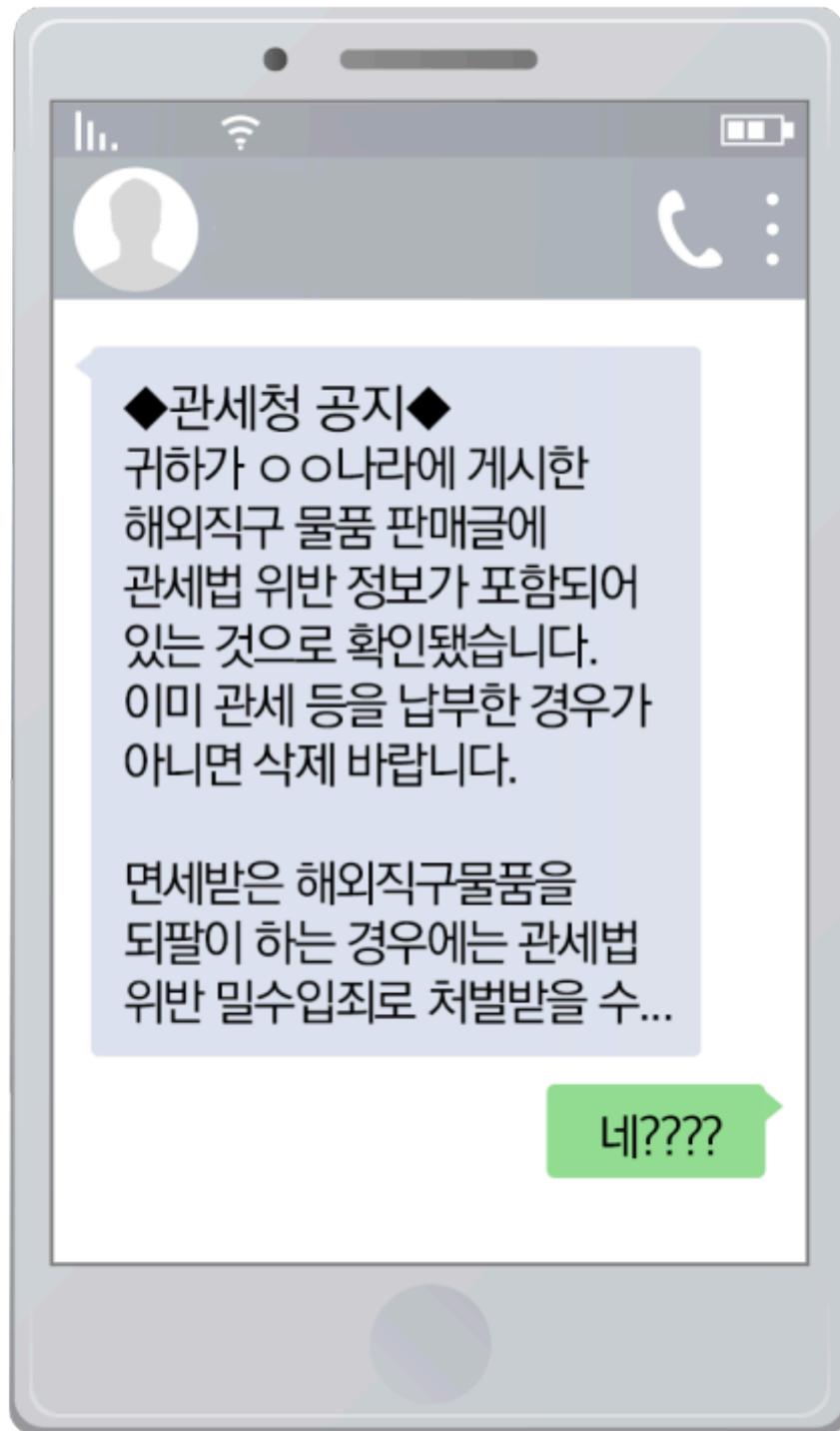
유가 생겨 쓰기 싫어질 수도 있겠는데요.

직구한 물품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국내에서 산 물품이라면 교환이나 반송을 하면 되지만 해외직구는 이런 과정이 복잡하고 더 오래 걸리니까 간단한 방법을 찾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.

직구로 산 물품, 중고거래 해도 될까요?

만약 직구한 물품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았다면 남에게 팔면 안 됩니다. 면세 받은 직구물품을 남에게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.



이상하죠? 내돈내산 했는데 왜 팔면 안 된다는 걸까요?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
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 납부가 필요하지만, \$150(미국발 물품 \$200) 미만의 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이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내가 쓸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면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로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

다.

세금을 면제받고 반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수량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엄연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!



- 아예 뜯지도 않고 새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안 되나요?

상품이 새 상품인지 아닌지는 상관 없고, 해외직구를 할 때 "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품은 판매하면 안 된다"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

판매가 목적이라면 '정식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'가 필수입니다.

- 구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팔거나 구매물품 중 일부만 판매하는 것도 안 될까요?

예, 안 됩니다! 저렴하게, 또는 원가로 팔아도, 또 구매품 중 일부만 팔아도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- 세금을 낸 물품은 판매해도 괜찮단 말인가요?

개인이 납세 후 통관한 물건이더라도 수입물품 판매 시 필요한 요건이 있는 물품을 요건 미충족 상태로 되팔면 국내법상 관련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
- 만약 해외직구 새 상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 하는 상황이면 어떡하나요?

수입한 지 30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하면 세금을 내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.

면세품의 되팔이 혐의가 확인되면 세관 통고 처분을 받거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. 또, 밀수입죄로 분류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 및 물품 원가만큼 추징될 수 있는데요. 여러 차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.



관세청은 온라인 마켓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리셀러를 상시 단속하고 있습니다. 해외직구 되팔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. 이익을 내지 않고 원가에 되파는 행위 역시도 직구 되팔이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어야겠습니다.



정책기자단 C-STAR 7기 엄경빈

